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20 선고 2019가단4982 판결 [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501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2. 23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2019. 6. 1.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연 15%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3. 일부기각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. 6.

1.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%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

판사유영일

별지